

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므로 육교 사용 허가시 사용기간에 대한 기준범위를 구체화하고 최장 2년 등으로 제한 사용케 하는 것은 시민이용 차원의 홍보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나. 동 조례안 제3항의 개정안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별표중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99.11.15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과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함.

IV. 종합의견

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육교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행사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1년의 기간내에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 별표중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육교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요지

1. 제출이유 검토

중앙정부의 규제정비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99. 1.29, '99.4.15) 및 같은법시행령('99. 6. 8)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에 관련한 규정 등을 개정된 법규내용으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1)조례안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안전점검의 실시 외에도 도로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 실시 주기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2)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내용중 안전점검 실시구분의 종류인 용어 명칭을 “일상점검”을 “정기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정밀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은 '99. 1. 29 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2항의 안전점검 실시구분 내용과 일치되므로 적합함.

(3)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2호중 “정기점검 : 2년에 1회이상(교량은 매년 1회이상)”을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은 '99. 6. 8 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과 합치되나

○현행 조례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항 제1호, 제2호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그 동안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와 유지관리로 시설물 대부분이 구조적기능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지만